

약관변경대비표

1. 약관명 : 『예금거래 기본약관』
2. 변경의 필요성 : 공정위 표준약관 개정에 따른 약관 개정 필요
3. 주요 변경내용 : 장기 무거래 예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도록 제9조의2(휴면예금 및 출연) 추가하여
약관 개정
4. 신규 조문 대비표 :

개정 전	개정 후	비 고
<p>제1조 적용범위 ~ 제8조 증권의 부도 (생략)</p> <p>제9조 이자 (생략) <신설></p> <p>제10조 지급·해지청구 ~ 제24조 이의제기 (생략)</p>	<p>제1조 적용범위 ~ 제8조 증권의 부도 (좌동)</p> <p>제9조 이자 (좌동)</p> <p>제9조의2 휴면예금 및 출연</p> <p>① 은행은 예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<u>예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(이하 "휴면예금"이라 한다)으로 본다.</u></p> <p>1. <u>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예금</u></p> <p>2. <u>거치식, 적립식 예금은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예금</u>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휴면예금은 「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0조에 따라 "서민금융진흥원"으로 출연될 수 있으며, 원권리자는 <u>출연된 휴면예금을 동법 제45조에 따라 지급 청구할 수 있다.</u></p> <p>제10조 지급·해지청구 ~ 제24조 이의제기 (좌동)</p>	<p>장기무거래 예금의 소멸 시효가 완성 될 수 있도록 휴면예금 및 출연 조항 추가</p>